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## 충청북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황 규 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6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도로교통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사업 및 지원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의 중단과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, 안 제6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과

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조례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
- 상위법령인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지원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.
-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 차원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관련 규정을 명시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그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지원 예산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보조금 집행 사항 검사와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입법예고('21. 9.24. ~ '21. 9.30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 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 운영을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에 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